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0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4. 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1),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18.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2016. 4. 5. 접수 제38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C은 D에게 청주지방법원 2018. 1. 29. 접수 제9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날 접수 제9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4.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5. 피고 B 앞으로 2016. 4.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12. 8. D 앞으로 2016. 12. 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인 D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가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가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가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 대한 2014. 10. 22.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채무초과상태였던 D은 전처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과 사이에 2014. 10.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 4층 부분을 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 E이 D에게 송금해 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D에게 위 건물을 반환하였으므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D에게 지급한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민

별지

1) 2022. 2.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선해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